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6년 4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75 호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복리후생비 지급) 중 ‘별표1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직급보조비	임직원	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00,000원 · 3급 : 250,000원 · 4급~7급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· 8급~9급 : 155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
부 칙

이 규정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 장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유 경 (3 9 0 - 7 6 4 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

제6조(복리후생비 지급)

[별표1]

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(이하 생략)			
직급보조비	임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00,000원 · 3급 : 250,000원 · 4급~7급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	매월 급여일 지급
(이하 생략)			

개 정 안

제6조(복리후생비 지급)

[별표1]

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(이하 생략)			
직급보조비	임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00,000원 · 3급 : 250,000원 · 4급~7급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· 8급~9급 : 155,000원 	매월 급여일 지급
(이하 생략)			